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411
----------	-----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일

발 의 자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박춘희, 이은미의원

1. 제안이유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관련)
- 나.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안 제5조관련)
- 다.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시행(안 제6조관련)
- 라.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위한 촉진 시책 추진(안 제7조관련)
- 마. 시장·판로개척 사업 지원(안 제8조관련)
- 바. 김장의 날 지정(안 제9조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김치산업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3. 19. ~ 3. 27.(의회사무과-359), 의견없음.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내 김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평창군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내 김장축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장·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창군의회 의원
 3. 평창군 농정과장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군수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군수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평창군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장·판로개척 지원) 군수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김장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김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2.>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

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세계화 촉진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김치의 날)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조세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기반시설 구축) 군수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장·판로개척 지원) 군수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
연락처	(033) 330 -2505